



주상면 회보

제 22호
2024. 5. 29.(수)

본 회보는 정부 공문서 감축 지침에 의거 시달되는 것이므로
공문과 동일 효력을 발생하며
각 마을별로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안내(FAX 940-7359)

담당	대표전화	성명	개인전화	담당	대표전화	성명	개인전화
면장	940-7350	박승진	7350	행복복지 담당	940-7370	강신수	7371
총무담당	940-7360	백운주	7361			황혜영	7372
		최재관	7362			홍한지	7373
		이민영	7363				
		정보연	7365				
개발담당	940-7380	제종복	7381	경제산업 담당	940-7390	최성훈	7391
		이민오	7382			최대득	7392
						안재현	7393

○ 가로등 고장 신고

- 가로등 고장 신고 방법은 부착된 가로등번호로 신고
- 신고 전화 : 940-8888

♣ 본 회보는 반장, 지도자, 개발위원,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람	반장(1.2)	새마을지도자(남.녀)	개발위원장	이장

주 상 면

차례

총무담당

- 1. 2024년 도내 대학 입학 장학생 추가 선발계획 안내 1
- 2.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 1
-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2

행복복지담당

- 1. 정담은 찬(饌) 반찬나눔 사업 대상자 추천 3
- 2.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지원 안내 3
- 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예방 홍보 4
- 4.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조 4

차 례

경제산업담당

1.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농가 준수사항 안내	5
2. 양파 생육불량 피해에 따른 농업피해 신고 안내	5
3.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6
4. 생활 및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안내	6
5. 2024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7
6. 과수 탄저병 예방을 위한 탄저병 방제요령 안내	7
7. 축사 화재 예방 홍보	7
8.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8
9. 2024년산 씨감자 보급종 수요조사 안내	8
10. 폐자원 보상 교환 확대 시행 안내	8
11.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사업 시행 안내	9
12. 광견병 예방약품 접종 안내	9
13.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수요조사	9

총무담당

1 2024년 도내 대학 입학 장학생 추가 선발계획 안내 이민영(940-7363)

- 신청기간 : 2024. 5. 20.(월) ~ 5. 31.(금)
 - ※ 거창군 추가 모집인원 : 4명(도내 대학 입학생)
- 신청자격
 - 법정저소득층 또는 '23년 경상남도 교육지원바우처사업 대상자 또는 소득분위 70%이하 가구*자녀
 - *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 가구는 '23년 건강보험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름
 - 도내 고교 졸업생 중 '24학년도 수능·내신 4등급 이내 성적의 도내 대학 입학생
 - 학생 및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도내 1년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1인당 2백만원(생활비성 장학금)
- 접수처 : 면사무소 총무담당(☎055-940-7363)

2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이민영(940-7363)

- 추진목적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 확보
 -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 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본인수단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안내문 : [붙임1] 참조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
- 문의처 : 거창군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055-940-8344)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암환자
 -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당연선정
 - 건강보험 하위 50% * :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 받은 자 또는 2021. 6. 30.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납부자('24년 기준)
 - ** 5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소아암환자 : 소득·재산이 사업 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C, E)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이 사업 기준에 적합한 자

*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행복복지담당

1 정담은 찬(饌) 반찬나눔 사업 대상자 추천

황혜영(940-7372)

2024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정담은 찬(饌) 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하오니 마을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한 : 2024. 6. 7.(금)
- 대 상 : 반찬 지원이 필요한 돌봄 취약계층
 - * 장애인, 독거노인,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 지원내용 : 1가구당 월 1회, 총 6회(6~11월) 밑반찬 제공
- 협조사항 : 마을별 대상가구 추천 (도평, 원성기 3가구 / 그 외 1가구)
 -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반찬서비스, 거창여성 농업인센터 지역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지원 대상자 제외

2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지원 안내

홍한지(940-7373)

- 신청기간 : 2024. 3. ~ 12.
- 대 상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내 용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경(6,400원 / 1가구)
- 제출서류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예방 홍보

홍한지(940-7373)

- 사업기간 : 연중
-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붙임2] 참조
 -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실종자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 신고상담 : 익명 / 실명신고 모두 가능
 - 군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 055-940-3133)
 -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4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조

황혜영(940-7372)

- 발굴기간 : 연중
- 발굴대상 : 마을 주민 중 위기상황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중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사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지원내용 / [붙임3] 참조
 -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파악
 - ⇒ 복지상담, 정부지원제도, 기타 필요 민간복지서비스 등 연계

경제산업담당

1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농가 준수사항 안내 안재현(940-7393)

5월 18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과 안성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지역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상병의 거창군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과수 농가의 사전방제조치 이행사항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장님들께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준수사항을 농가에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화상병 의심주 발생 시 즉시 1833-857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 농작업도구(전정가위, 전정톱 등)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
- 적과, 봉지씌우기 등으로 유과를 만질 경우 손도 수시 소독
- 과수원 출입 전·후 작업복이나 신발, 모자, 장갑, 농기구 등의 외부 접촉부위에는 소독액을 살포하여 소독 시행
-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수원출입 시 임대 농기계를 청결하게 소독·세척
- 발생지역 과원 및 발생지역 경유 등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이전 방문지역이 불투명한 작업자의 작업투입 지양
- 외부인 무단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출입 시 출입 전 소독 실시
- 전정 작업 등 농작업 시 작업 인부가 소지한 외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 도구 사용
- 전정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은 매몰 또는 모아서 폐기

○ 안내문 : [붙임4], [붙임5] 참고

2 양과 생육불량 피해에 따른 농업피해 신고 안내 최대득(940-7392)

- 신고기한 : 2024. 6. 3.(월)
- 대상작물 : 양과
- 피해내용 : 분구, 추대, 냉해피해
- 접수처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3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최성훈(940-7391)

- 신청기간 : 2024. 5. 29.(수) ~ 12. 31.(화)
- 대상자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 ※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 ▶ (지원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 (중복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용기간 : 2024. 7. 1.(월) ~ 2025. 5. 25.(일)
- 지원방법 :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지정(신청)한 지원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가능

4 생활 및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안내 최대득(940-7392)

최근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면에서는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니,이장님들께서는 불임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

- 단속대상
 - 마을주변, 논밭 등 노천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 화목보일러 사용 시 비닐, 플라스틱 등 소각금지품목 소각행위
-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불법소각 근절 홍보 협조 [불임6] 홍보물 참조

5 2024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최대득(940-7392)

- 신청기한 : 2024. 5. 31.(금)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요건 : 최소 1,000㎡ 이상 신청, 상한면적 없음
 -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해당 읍·면에 신청
- 대상농지
 -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024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023년 신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농지
- 대상품목
 - 벼 이외 다른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벼 재배농지)
 - 전락작물직불 지급대상(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휴경
- 지원단가

구분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두류	가루쌀	휴경	하계조사료
지원단가 (만원/ha)	150	150	50	50	150	50

6 과수 탄저병 예방을 위한 탄저병 방제요령 안내 안재현(940-7393)

- 탄저병 방제방법
 - (방제시기) 3월 석회유황합제 살포 / 4~5월, 8~9월 집중 방제
 - * 분생포자 비산시기(6월하순~7월 하순) 예방 및 집중방제로 확산 저지
 - (방제요령) 강우 전 보호살균제, 강우 후 침투이행성 약제로 방제
 - * 정기방제일 비가 올 경우 미루기보단 앞당겨 약제 살포 실시
 - * 고온기에 비가 여러 번 온다면 정기방제 사이에 추가 방제 권장
 - (발병후 대응) 발병 후에는 보호살균제 방제 지양
 - (과원관리) 도장지 제거, 질소비료 감비, 배수관리 철저 등
 - * 의심증상이 있는 과실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원 밖으로 완전히 제거
- 탄저병의 전염 및 기상요인 : [붙임7]

7 축사 화재 예방 홍보 안재현(940-7393)

- 홍 보 문 : [붙임8]

8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최대득(940-7392)

- 신청기한 : 2024. 5. 31.(금)
- 신청대상 : 거창군내 주소지 ·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 ※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단가 : 사업 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해당 읍·면에 신청

9 2024년산 씨감자 보급종 수요조사 안내 최대득(940-7392)

- 신청기한 : 2024. 6. 13.(목)
- 신청절기 : 추기분, 춘기분 구분 신청
- 신청품종 : 4품종(수미, 조풍, 두백, 풍농) * 조풍은 추기만 공급
- 공급시기 : 추기공급('24년 11월 ~ 12월), 춘기공급('25년 1월 ~ 3월)
- 접수처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10 폐자원 보상 교환 확대 시행 안내 최대득(940-7392)

- 교환기간 : 연중
- 교환장소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또는 거창군 매립장
- 교환기준

재활용품			⇔	교환물품
폐건전지		15개		건전지 1세트(2개)
우유팩	200ml	75개		
	500ml	30개		
	1000ml	15개		
투명페트병 (무색 / 생수, 음료)		15개		롤화장지 1개

11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사업 시행 안내 최대득(940-7392)

- 기 간 : 2024. 5. 7. ~ 계속
- 대 상 : 거창군 관내 전 읍·면
- 품목별 배출방법
 - 알약·가류약 : 폐의약품 전용회수봉투 이용 또는 일반우편봉투 이용
우체통에 배출
 - 물약 등 액체약제 : 우체통으로 배출 시 우편물 오염 우려 → 거점수거함* 배출
- * 거점 수거함 위치 : 읍(보건소,약국), 면지역(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
- 전용회수봉투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비치

12 광견병 예방약품 접종 안내 안재현(940-7393)

- 접종기간
 - 1차 : 5월 중
 - 2차 : 9 ~ 10월
- 접종대상 : 동물등록 개체, 산간지역 개체
- 사업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을 통한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
- 접종방법 : 우리동물병원 방문 접종(북상면 지정 공수의)
- ※ 수의사 시술비 1만원 축주 부담

13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수요조사 안재현(940-7393)

- 기 한 : 2024. 6. 7.(금)까지
- 대 상 : 3ha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 ※ 도로,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3ha 이하
- 해제기준 :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 → 비농업진흥지역
- 검토사항 :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지 여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붙임1]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안전한 의료이용, 본인확인으로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등 지참 필수**
※ 2024년 5월 20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단하게 접수하세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QR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카메라로 QR 촬영)



안드로이드 용



아이폰 용

[붙임2]

**신고자 신분은 보장해주고
신고포상금을 드려요!**

"각 사생활로 신고포상금을 지급"

신고유형	지급액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단체 신고포상	환수결정액의 10~3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	환수결정액의 30%
어린이집 신고포상	환수금액의 10~30%
부담청구 장기요양기관·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	징수금의 10~40%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복지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관련한 인터넷(복지로), 우편, 팩스 신고"

▶ **복 지 로** www.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하기
(신고내용 작성)

신고 접수
(접수 완료 및
처리부서 지정)

조사
(면담 자차제)

결과 통보
(조사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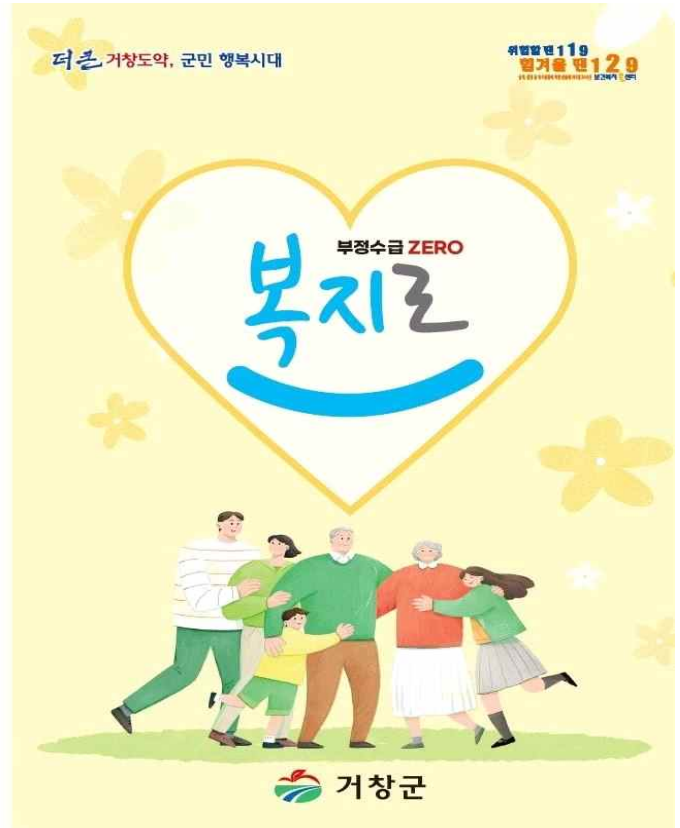
▶ **우 편** (50132)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 **신고상담** 055) 940-3133(기초생활담당)

▶ **팩 스** 055) 940-3089 ▶ **모바일앱** 복지로 앱

익명/실명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및 부정수급 내용을 6개월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복지 부정수급은 범죄!

대표적 부정수급을 알아보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장애수당

-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 연금·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 위장이혼, 사실혼 등을 숨기거나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기간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한 사실을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어린이집

-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
-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기초연금

- 실종자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해 주세요!

☎ 신고상담 055) 940-3133(기초생활담당) www.bokjiro.go.kr / 모바일앱 : 복지로 앱

[붙임3]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복지
위기가구란?

-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 혼자 사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
-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신청자격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자 누구나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도움요청 홈페이지(www.bokjira.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지원내용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준수사항

□ 출입·농작업 시 소독 철저

- ① 농작업도구(전정가위, 전정톱 등)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
※ 작업하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작업도구 소독 반드시 실시
- ② 적과, 봉지씌우기 등으로 유과를 만질 경우 손도 수시 소독
- ③ 과수원 출입 전·후 작업복이나 신발, 모자, 장갑, 농기구 등의 외부 접촉부위에는 소독액을 살포하여 소독 시행
※ 착용한 작업복은 60℃ 이상의 물로 세탁
- ④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수원출입 시 임대 농기계를 청결하게 소독·세척

« 소독 방법 »

- 소독약제 :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20배 희석액)
 - 전정가위 등 소형도구 : 소독액에 침지 소독하거나 분무 소독
 - 경운기 등 대형농기구 및 장갑 등 : 분무 소독
- ※ 시중에 판매·공급되고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 사용 가능

□ 예방을 위한 과원 관리

- ① 발생지역 과원 및 발생지역 경유 등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이전 방문지역이 불투명한 작업자의 작업투입 지양
※ 불가피하게 작업에 투입되어야 할 경우 과원 출입 전 철저한 소독 실시
- ② 외부인 무단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출입 시 출입 전 소독 실시
- ③ 전정 작업 등 농작업 시 작업 인부가 소지한 외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전용 도구 사용
※ 외부 도구 사용 시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소독 후 사용
- ④ 전정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은 매물 또는 모아서 폐기

[붙임5]

과수 생육기·수확기 농작업 및 과원 관리 수칙

□ 생육기 농가 준수사항

- ① 열매숙기(적과)·잎따주기(적엽)·순따주기(적심) 가위 등 철저하게 소독
- ② 과수화상병 감염 우려 시 순따주기(적심), 잎따주기(적엽) 처리 등은 가급적 삼가고 유인(자라는 방향 조절) 위주 관리, 24시간 이내에 강우 예상 시 순따주기(적심) 중단
- ③ 착색기 조류, 산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 차단
- ④ 장마 후 토양 내 과도한 수분 제거를 위해 강우 3~5일 후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도구 소독

□ 수확기 농가 준수사항

- ① 수확, 포장, 운반, 저장 도구 및 기계 수시 소독
* 농기계 및 도구: 고소작업차, 수확바구니, 가위, 사다리 등
- ② 착색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과도한 잎따주기(적엽) 지양
- ③ 수확상자, 도구, 과일 등은 과수원 흙바닥에 적재 지양
- ④ 일소 피해과, 상처과 등 제거 철저, 수확 시 나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수확

□ 외부인의 과원 무단 출입 제한하기 및 관리사항

- ① 병원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 무단 출입 제한
- ② 불가피한 경우 출입 전 반드시 소독(필요시 방제복, 덧신 등 착용) 후 출입
- ③ 작업자(작업단) 인적사항 및 작업내용을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

《 농기구 소독방법 》

소독약제 :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20배 희석액)

- 소형(적과·수확 가위 등) : 소독액에 침지 또는 분무소독
- 대형(경운기, 사다리 등) : 분무 소독

※ 시중에 판매·공급되고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 사용 가능

과수화상병 발생 신고

전국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 1833-8572)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맙시다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로 미세먼지, 악취, 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소각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등에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

불법소각의 문제점

불법소각 시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건강상 피해 유발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

-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하여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은 반드시 이물질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목재를 사용합니다.
- ❖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으로 수집하면 일괄 수거합니다.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참고 탄저병의 전염 및 기상요인

□ 탄저병의 전염 및 발병 생애

- 탄저병은 종자로도 전염할 수 있지만, 지난해에 버려진 병든 잔재물(이 병 과실, 가지, 낙엽 등)이 가장 중요한 1차 전염원이다.
- 병원균이 과실에 부착된 후 최적 조건에서는 4시간 이내에 침입하고 4일 이내에는 2차 전염원인 분생포자를 형성한다.
- 탄저병은 감염 후 빠르면 4일째부터, 늦게는 10일 후 외부에 병 증상이 나타난다.

□ 탄저병 발생 기상요인

- 병원균의 감염은 온도 25~30℃, 상대습도 70% 이상에서 잘 이루어지며, 분생포자의 전파는 고온기에 관수시의 물방울이나 빗방울 혹은 바람에 의해 이뤄진다.
 - 병원균의 약 99%는 비가 올 때 빗물에 의해 전파되고 맑고 건조한 날에는 거의 전파되지 않는다.
 - 식물체 표면에서 포자는 35℃이하의 온도와 수분이 존재하면 발아하여 부착기를 형성한다.
 - 분생포자는 약 5시간만 건조하게 되면 발아율이 98%이상 떨어진다.
 - 병원균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으로 이 기간동안 식물체가 젖어 있으면 감염이 일어난다.



사과 탄저병 증상



단감 탄저병 증상

고추 탄저병 증상

참고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전기화재 예방 요령

I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

-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
- 전기설비 점검과 개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
- 환풍기, 보온등, 온풍기 등 전기기구와 전선의 관리 철저
- 전선,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 주기적으로 청소
- 문어발식 배선금지
- 노후화된 개폐기, 차단기는 즉시교체
-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작동시험
-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 된 콘센트 등 노후 전기시설 즉시 교체
- 축사에 전선 등 배선은 방수용 전선을 사용하고 노후전선 즉시교체
- 쥐 등에 의해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공사를 실시
- 사용환경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 내후성 있는 전선으로 교체
-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 전기기계·기구의 먼지제거 등 청결유지
-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시설 확인 및 시공
- 모든 전선의 접속부는 견고히 접속
-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재해보험 가입

II 전기화재 발생 주요 원인 및 예방법

1. 합선(단락)에 의한 화재

- 전기기기나 회로의 절연체가 전기적 또는 기계적 원인으로 열화 및 파괴되어 합선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

☞ 예방

- 전선 고정에 못, 스테플 등 사용 금지
- 전열기에 온도조절장치 부착
- 전기시설 노후전선 교체
- 단자와 연결부분 접속부 수시점검 필요
- * 풀린 나사 재조임 실시

2. 과전류에 의한 화재

- 모터, 전기 소비량이 많은 전기기구나 전기장치를 동시에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해 부하전류가 증가하여 과열, 발열하게 됨

☞ 예방

- 문어발식 배선 금지
- 많은 전류가 흐르는 기구를 동시에 사용 금지
 - * 가능한 전용의 콘센트를 설치
- 전선은 규격 이상 전선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 할 것

3. 누전에 의한 화재

- 전기기구 파손, 불량 전기배선 등이 접지 물건과 접촉 또는 전선피복 손상 등으로 누설전류가 발생되어 열의 축적으로 발화

☞ 예방

- 누전차단기 설치
- 파손된 기기는 수리 또는 교환
- 수시로 절연상태(누전여부) 확인

4. 스파크에 의한 화재

- 스파크는 전기회로를 개폐할 때 또는 단락 될 때 전기기구 접촉부분의 불량 등에 의해 발생

☞ 예방

- 스위치에 보호용 캡 사용
- 스위치 내부나 주위에 분진 등 퇴적물 수시로 제거
- 각종 개폐기 조작부는 가연성 물질이 체류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 스파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 근처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 금지

5. 전기기기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

- 이상이 없는 전기기기라도 취급을 잘못하면 화재를 일으키게 되며 무리하게 사용해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용 중인 전열기기 위에 가연물이 떨어져 발화

☞ 예방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둘 것
-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